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9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이해민
박은정 · 서왕진 · 차규근
김준형 · 김선민 · 신장식
백선희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중돌봄(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한다) 가구의 영유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8. (생략) ②·③ (생략)	<u>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한다)</u> <u>가구의 영유아</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